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3,000,000	16,590,000
일반회계	461,900,000	13,857,000
특별회계	91,100,000	2,733,000
공기업특별회계	14,200,000	426,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200,000	426,000
기타특별회계	76,900,000	2,307,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280,000	458,400
수질개선특별회계	2,778,000	83,34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232,000	66,9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90,000	29,7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300,000	69,000
주택사업특별회계	1,590,000	47,7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550,000	16,5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25,000	57,750
치수사업특별회계	4,040,000	121,2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790,000	83,700
대지보상특별회계	1,150,000	34,5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45,000	1,3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230,000	1,236,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88,12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